


대한상의 브리프

권용수 건국대 교수



제144호 2021년 3월 22일

 집단소송의 전면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집단소송 도입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편집자주**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집단소송법안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지난해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인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증권 분야에 한정해 집단소송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모든 형태의 배상청구소송에 집단소송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경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도입이유를 밝혔지만, 기업과 전문가들은 소송남용으로 인한 폐해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집단소송제도란?

‘집단소송’이란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말한다. 집단소송의 판결은 실제 피해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겠다는 별도의 ‘제외신고(opt-out)’를 하지 않는 한 피해자 전원에게 자동으로 효력이 미친다. 판결금액도 피해자 전원의 손해액을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훨씬 큰 금액이 결정된다.


[미국의 대표적 집단소송 사례]

 **McDonal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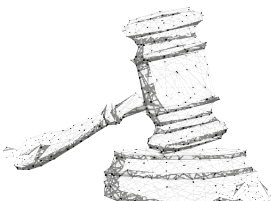
2. 맥도날드 열량 소송(2020)
“맥도날드에서 판매하는 햄버거 열량이 광고 내용보다 높아 소비자가 비만 위험 관리를 실패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 8년간 소송 끝 회사측 승소... 브랜드 이미지 실추



3. 라이트 담배소송(2006)
“‘순하다’는 의미의 ‘라이트(light)’라는 표현을 상품명에 사용해, 건강에 대한 피해가 적다는 인상을 주어 소비자들을 기만했다!!”
→ 101억 달러 배상판결



4.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2016)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제어 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해 실제보다 적게 배출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 147억 달러 배상판결



1938년부터 집단소송법을 도입한 미국에서는 담배, 가습보형물, 패스트푸드 등과 관련한 다양한 집단소송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제어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한 독일의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총 147억 달러(약 17조 4천억 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집단소송제 제정안의 다섯 가지 특징

법무부가 입법코자 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크게 다섯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에 전면도입한다. 현재는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 증권 관련 소송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조물 책임, 공정거래, 특허 및 상표, 개인정보 등과 관련한 소송도 집단소송이 이뤄질 수 있다.

둘째,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대폭 경감된다. 제정안에 의하면 원고는 피해사실에 대해 개략적으로만 주장해도 되지만, 피고는 이를 구체적으로 답변하도록 했다. 현재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과 같이 원고의 입증이 쉽지 않은 분야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원고의 입증책임을 경감시켜주고, 그 외의 통상적인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입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이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더해 피고는 법원이 자료제출 명령을 하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영업비밀 제출 의무는 특허침해소송 등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되었다.

셋째, 소송허가의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서는 대표당사자의 요건에 대해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관여했던 자는 소송을 대표하지 못하도록’ 걸격사유도 두었다.



[집단소송제 제정안 주요내용]

1. 모든 분야에 전면도입
2. 입증책임 경감 및 자료제출 의무
3. 소송허가요건 완화(남소방지 장치 삭제)
4. 1심 국민참여재판이 원칙
5. 소급적용 허용

그러나 이번 제정안에는 소송허가 심사기간 단축을 이유로 이러한 조항들을 모두 삭제했다.

넷째, 1심 재판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다. 현행법상 국민 중에서 선정된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은 중대한 형사재판에서만 이루어지도록 되어있으며, 피고의 신청에 의해 구성된다. 반면 집단소송법 제정안에서는 원고의 반대가 없으면 피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1심 재판을 배심제로 진행하도록 했다. 법원 판결이 배심원의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별도의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배심원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법시행 이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소급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집단소송이 어디까지 제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대륙법계 최초 집단소송제 전면도입

입법예고된 집단소송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대륙법 체계를 갖춘 나라 중 최초로 집단소송제를 전면도입한 나라가 된다.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대륙법 체계와 영미법 체계는 각각 그 사회의 역사, 철학, 가치관 등이 축적된 결과인데, 영미법 체계의 집단소송제를 전면도입시 대륙법 체계인 국내 법 체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독일, 일본,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집단소송제가 아닌 ‘단체소송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하는 단체소송은 소송을 신청한 피해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방식(Opt-in)으로 운영하고, 피해자 일부가 아닌 소비자단체가 대표로 소송하는 등 소송 자격을 까다롭게 둔다. 특히 유럽연합(EU)에서는 10년간의 논의 끝에 지난 2013년 회원국에 집단소송제에 대한 공통원칙을 권고했는데, EU는 미국식 집단소송을 ‘독성이 강한 카테일’이라 비유하면서 유럽 법문화와 체계(대륙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도 찾기 힘든 실험적 제도

이번 제정안은 미국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하면서도 미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은 대거 추가되었고, 남소방지에 필요한 장치는 빠졌다.

무엇보다 원고측 입증책임이 경감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소송제도의 기본원리는 ‘원고가 입증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일반소송에서는 원고가 입증 책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지만, 그것보다 파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소송으로 전환하면 오히려 입증책임이 낮아지는 불합리성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 일반 민사소송에서 집단소송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피해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예외없이 제출하게 한 것도 우려되는 점이다. 영업비밀은 기술유출 방지 등 각종 법률로 보호되는 기업의 핵심자산으로, 민사소송법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특허소송’과 같이 영업비밀의 확인이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치를 일반 배상책임을 다루는 집단소송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남소방지 장치를 폐지·완화한 것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번 제정안에는 기존에 있던 대표당사자에 대한 예시규정, 결격사유 등의 소송요건 제약이



[각국별 집단피해 구제제도 현황 비교]

법 체계	영미법 체계		대륙법 체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국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유형	집단소송	집단소송	단체소송	단체소송	단체소송	단체소송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제외신고하지 않은 피해자 전원 (Opt-out)	가입신고한 피해자 (Opt-in) *공정거래 분야는 Out-out	가입신고한 피해자 (Opt-in)	가입신고한 피해자 (Opt-in)	가입신고한 피해자 (Opt-in)	가입신고한 피해자 (Opt-in)
소송담당자	피해자 일부	피해자 일부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

* Opt-out: 별도의 ‘제외신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의 효력이 자동으로 편입되는 방식

* Opt-in: 피해자가 별도의 ‘편입신고’를 통해 판결의 효력 범위에 산입되는 방식



[집단소송법 제정안 중점사항 및 해외사례 비교]

구분	집단소송법 제정안	해외사례
입증책임 경감	원고는 '개략적' 주장, 피고는 입증책임 부담	원고에 입증책임 부담
영업비밀 제출의무	법원 요구시 영업비밀도 예외 없이 제출 의무	영업비밀 제출해도 비밀유출 방지 위한 법적수단 존재 민사실체법상 영업비밀 보호원칙
소송허가요건 완화	별도의 남소방지 장치 없음	3년간 5건 이상 관여자는 집단소송에서 배제
1심 국민참여재판	모든 1심 사건에 대해 적용 피고측 기피신청 불가	민사재판상 배심제 사실상 소멸 중범죄 사건에만 배심제 적용
소급적용 허용	법시행 이전 사건에 대해 소급적용 가능	법적안정성 훼손 않는 범위에서 제한인정 일반적 소급입법 금지원칙 적용

삭제되어, 남소를 방지할 수단이 약화됐다. 집단소송의 본토인 미국에서도 남소 부작용 경험을 통해 엄격한 남소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공 감미료가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검증되지 않은 연구 결과를 근거로 코카콜라에 대한 집단소송이 제기되는 등, 증권집단소송건수는 174건('10년) → 217건('15년) → 428건('19년)으로 계속 급증하는 추세다.

1심에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한 것도 과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집단소송은 사법적 법률관계를 다투는 민사소송의 절차로서, 복잡한 쟁점이나 손해액 산정 등에 전문성이 필요하다. 유럽에서는 중범죄 형사사건에만 배심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배심제가 활발한 미국도 민사재판에서는 배심제가 거의 활용되지 않아 사실상 소멸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끝으로 소급적용과 관련해 별도의 제약을 두지 않은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독일은 '일반적 소급입법 금지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법적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급적용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입법에 앞서 신중한 논의 선행돼야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경영을 제고하는 것은 중요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추진돼야 한다는 데 기업들도 공감한다. 그러나 무조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 집단소송제는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폐해가 지적되고 있다. 집단소송제와 함께 입법 추진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상법 개정안)와 맞물리면 그 파장은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르게 된다.

우리 법문화와 법체계는 유럽식을 따르고 있다. 독일도 유럽식 단체소송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폭스바겐 사태에 한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한 바 있다. 유럽식 등 다양한 대안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과 제도는 일단 만들어지면 바꾸기가 어렵다.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이 맞는지, 도입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이 좋을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주체들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고, 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후에 제도를 선택해도 늦지 않다.

국내·외 경제지표

2021년 3월 22일 기준

1. 국내·외 경제성장률

(단위 : %)

	2019	2020 ^(E)	IMF		OECD	
			2021 ^(P)	2022 ^(P)	2021 ^(P)	2022 ^(P)
한국	2.0	-1.0	3.1	2.9	3.3	3.1
세계	2.8	-3.4	5.5	5.6	4.2	4.0
미국	2.2	-3.5	5.1	2.5	6.5	4.0
중국	6.1	2.3	8.1	5.6	7.8	4.9
일본	0.3	-4.8	3.1	2.4	2.7	1.8
EU	1.3	-6.8	4.2	3.6	3.9	3.8

* E -잠정치(Estimate) / P -예상치(Projections)

2. 환율·유가¹⁾

(단위 : 원(환율), 달러(유가))

	2018	2019	2020	'20.10월	11월	12월	'21.1월	'21.2월
원/달러	1,100	1,166	1,180	1,145	1,117	1,095	1,097	1,112
원/엔(100엔)	996	1,070	1,105	1,088	1,069	1,055	1,059	1,055
원/위안	166.4	168.6	170.9	170.5	169.1	167.6	169.6	172.3
원/유로	1,299	1,305	1,346	1,348	1,321	1,332	1,336	1,345
유가(Dubai)	69.7	63.5	42.3	40.7	43.4	49.8	54.8	60.9

3. 산업지표

(단위 : %(전년동기대비))

	2018	2019	2020	'20.10월	11월	12월	'21.1월	'21.2월
산업생산	1.6	0.6	-0.8	-2.7	-0.5	-0.3	1.4	-
소매판매	4.3	2.4	-0.2	-0.2	-1.5	-2.0	0.0	-
설비투자	-3.6	-6.2	6.0	-0.9	5.4	5.3	19.4	-
수출	5.4	-10.4	-5.4	-3.8	4.1	12.6	11.4	9.5
수입	11.9	-6.0	-7.2	-5.6	-1.9	2.2	3.1	13.9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